
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

2015. 8.



행 정 자 치 부

|| 목 차 ||

I .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 1

II. 작성계획 2

III. 향후조치계획 3

〈붙임〉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서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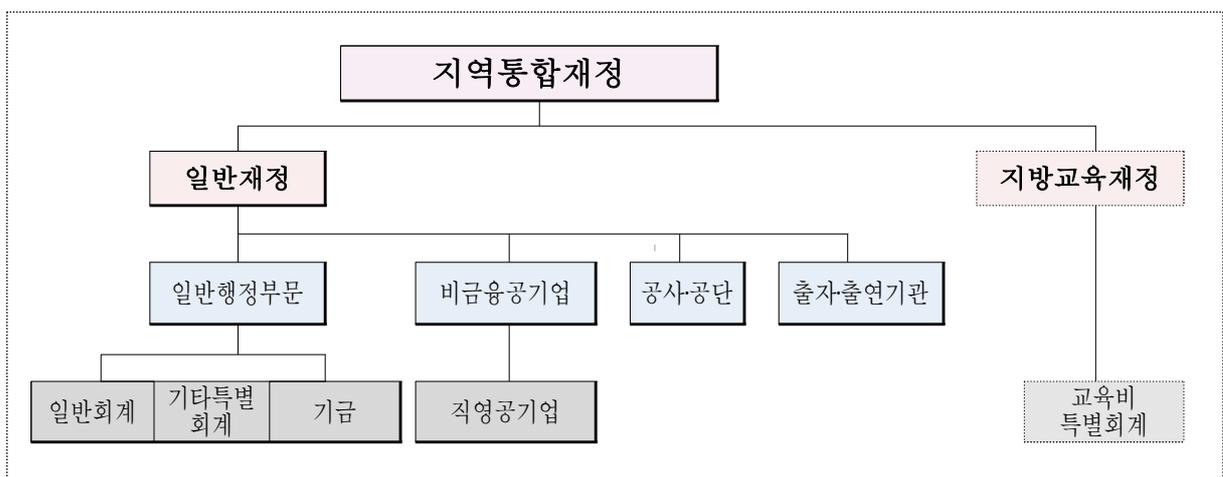
□ 작성근거

- 지방재정법 개정('14.5.28)으로 지자체장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(법 제59조)
 -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, 기준, 절차 등은 행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
- 중기재정계획에 동 '통계의 전망과 근거'를 포함토록 하고 「예산안 첨부서류」에 '통계 보고서'를 포함토록 규정(법 제33조, 44조의2)
 -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.

□ 지역통합재정통계 내용

- (개념) 자치단체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 포함), 기금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
 - 기존 통합재정개념(자치단체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에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
- (작성범위) 자치단체, 교육청,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

< 지방통합재정통계 체계도 >



< 고려사항 >

- '16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부에서 제시한 작성기준*에 따라 작성
* 교육부 협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(2회)을 거쳐서 작성
- '17년도에는 현재 용역중인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방안 연구용역* 결과를 반영
* (용역기간) '15.7.6~12.2, (용역 수행기관) 한국정부회계학회, (용역비) 47,535천원

□ 작성기준

-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른 예산서 첨부를 위한 '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'는 총계기준으로 작성
 - ※ 지자체 예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 의회심의 과정에서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계기준으로 작성
- 다만, 예산 확정 후 통합재정개요 작성시('16.1월)에는 내·외부 거래 등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기준 통계를 포함하여 작성
 - ※ 예산확정 후 작성하는 순계기준은 일반회계와 연계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, 공사공단, 출자출연기관별로 과목 연계표 작성하여 e-호조 시스템으로 취합
- 연말에 통합재정개요 작성 시 내부거래 제외방법 등 별도 지침 통보

□ 작성체계

- 작성주체 : 시도·시군구 예산담당부서
 - 작성협조 : 시도교육청, 지방공사·공단,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·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전체
- 작성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청 특별회계 포함), 기금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

○ 작성방법(총계기준)

- ① 시도교육청, 지방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에서 붙임 서식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,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로 제출(10월한)
- ② 시도·시군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지역 통합재정통계 작성하여 예산서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(11월)

※ 시도·시군구 관할지역 범위(17개시도, 226개 시군구)와 교육청 관할범위(177개 교육지원청)가 달라 시군구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함 통계 작성이 곤란하므로, 시도에서만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

○ 작성항목

- 기관별·회계별 예산 규모, 전년대비 예산 증감 비교
- 세입재원별 규모, 지출성질별, 세출기능별 예산규모
- 지방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의 수입예산·지출예산 현황
- 국가, 지자체 등 외부로부터 지원금 세부 현황 등

III 향후 추진계획

○ (행자부 조치계획)

-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 통보 : 8월 초
- ※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에 반영

○ (지자체 조치계획)

- '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' 작성, 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 제출 : 11월
- 지역통합재정의 전망과 근거를 포함한 '중기지방재정계획'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: 11월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~6. (생략)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
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1.~5. (생략)
6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(예산액 기준)
- 7.~14. (생략)

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59조(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(이하 "지역통합재정통계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및 기금
2.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
3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, 기준, 절차 등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참고 2 예산서 첨부서류 작성 서식(안)

1. 지역통합재정 총괄 규모

1-1.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/A)
총 계				
시도, 시군구				
교육청				
공사·공단				
출자·출연기관				

1-2. 회계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구성비	예 산				기 금	
		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교육비 특별회계	지자체 소관	교육청 소관
합 계								
시도, 시군구								
교육청								
공사·공단								
출자·출연기관								

1-3. 전년대비 증감비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/A)
총 계				
일반회계				
특별회계				
기타특별회계				
공기업특별회계 (직영기업)				
교육비특별회계				
기 금				
일반지자체 기금				
교육청 기금				
공사·공단				
출자·출연기관				

1-4. 세출성질별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비중	시도, 시군구, 교육청				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	
		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교육비 특별회계	공사 공단	출자 출연 기관
합 계								
인건비								
물건비								
경상이전								
자본지출								
용자 및 출자								
보전재원								
내부거래								
예비비 및 기타								
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

2-1. 규모

2-1-1. 기관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/A)
총 계				
시도, 시군구				
교육청				

2-1-2. 회계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비중	예 산				기 금	
		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교육비특별회계	지자체소관	교육청소관
합 계								
시도, 시군구								
교육청								

2-2. 세입자원별 규모

□ 작성대상 : 일반회계 + 특별회계 + 기금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5년 당초예산	구성비(%)	2016년 예산	구성비(%)
총 계					
자체수입					
지자체	지방세				
	세외수입				
교육청	수업료 등 자체수입				
이전수입					
지자체	지방교부세				
	보조금				
교육청	지방교육재정 교부금				
	보조금				
지방채					
지자체	지방채				
교육청	지방교육채				
기 타					
지자체	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				
교육청	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			

※ 구성비는 상단 셀의 총계 대비 비중을 기재

3. 세출성질별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비중	예 산				기 금	
		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교육비특별회계	지자체소관	교육청소관
합 계								
인건비								
물건비								
경상이전								
자본지출								
용자 및 출자								
보전재원								
내부거래								
예비비 및 기타								

4. 세출기능별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비중	예 산				기 금		
		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교육비특별회계	계	지자체소관	교육청소관
합계									
일반공공행정									
공공질서 및안전									
교육									
문화 및 관광									
환경보호									
사회복지									
보건									
농림해양 수산									
산업·중소 기업									
수송 및 교통									
국토 및 지역개발									
과학기술									
예비비									
인력 운영비									
기본경비 등									

3. 공사·공단 분야

(문의 : 공기업과 김지흥, 2100-3584)

3-1. 기관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/A)
총 계				
공 사				
공 단				

3-2. 재정현황

(‘15년 결산 기준 / 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자산(A+B)	부채(A)	자본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A/B)
계				
공 사	소계			
	OO공사			
	:			
공 단	소계			
	OO공단			
	:			

3-3.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수 입 예 산					지 출 예 산				
	소계	사업 수입	지원금	외부 차입	기타 수입	소계	사업비	부채 상환	기타	예비비
계										
공사	소계									
	OO공사									
	:									
공단	소계									
	OO공단									
	:									

- ※ 1)사업수입 : 주요사업수익 및 대행사업비
- 2)지원금 : 지자체의 출자·출연금, 보조금 등, <지원금 세부 내역> 참조
- 3)외부차입 : 공사채, 공단채, 보증금 등
- 4)기타수입 : 이자수입, 전기이월금 등
- 5)기타 : 이자지급, 법인세 등

<지원금 세부 내역>

(단위 : 백만원)

공기업명	계	국가 지원금	지자체 지원금	기타 지원금 (공공기관 등)
소계				
OO공사				
OO공단				
:				

- ※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

3-4. 세출예산 세부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구성비	예산	
			공사	공단
합계				
인건비				
물건비				
경상이전				
자본지출				
융자금 및 출자				
보전재원				
예비비				
기타 ¹⁾				

※ 기타 : 이익정산금, 반환금, 배당금, 법인세 등

4. 출자·출연기관 재정상황

(문의 : 공기업과 이유경, 2100-3586)

4-1. 기관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 A)	비율 (B/A)
총 계				
출자기관				
출연기관				

4-2. 재정현황

('14년 결산 기준 / 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자산(A+B)	부채(A)	자본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A/B)
계					
출 자	소계				
	기관명				
	:				
출 연	소계				
	기관명				
	:				

4-3.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수입 예산					지출 예산				
	소계	사업수입 ¹⁾	지원금 ²⁾	외부차입 ³⁾	기타수입 ⁴⁾	소계	사업비	부채상환	기타 ⁵⁾	예비비
계										
출자	소계									
	기관명									
	:									
출연	소계									
	기관명									
	:									

- ※ 1) 사업수입: 정부,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
 2) 지원금: 정부, 지자체의 출자·출연금, 보조금 등
 3) 외부차입: 사채, 보증금 등
 4) 기타수입: 이자수입, 전기이월금 등
 5) 기타: 이자지급, 법인세 등

<지원금 세부 내역>

(단위 : 백만원)

공기업명	계	국가 지원금	지자체 지원금	기타 지원금 (공공기관 등)
소계				
OO출자기관				
OO출연기관				
:				

- ※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

4-4. 지출예산 세부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구성비	예산	
			출자기관	출연기관
합계				
인건비				
물건비				
경상이전				
자본지출				
융자금 및 출자				
보전재원				
예비비				
기타 ¹⁾				

※ 기타 : 이익정산금, 반환금, 배당금, 법인세 등

※ 작성기준일 : 2015. 10. 1현재

지방공사공단 현황

구분	기관명	설립일자	대표자	정원			소재지
				계	정규직	기타	
합계							
공사	소계						
	〇〇공사						
	:						
공단	소계						
	〇〇공단						
	:						

출자출연기관 현황

구분	기관명	설립일자	대표자	정원			소재지
				계	정규직	기타	
합계							
출자	소계						
	〇〇기관						
	:						
출연	소계						
	〇〇기관						
	:						